

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제도 소개

1. 제도의 목적

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제도는 최근 자연재해의 피해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규모가 거대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관련법규

- 자연재해대책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.) 제60조, 제61조 및 제61조의2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.) 제47조 ~ 제51조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(이하“규칙”이라 한다.) 제23조 ~ 제26조
-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(이하“평가규정”이라 한다.)(소방방재청 고시 제 2010-36호)

3. 신청대상 및 범위

- 국내에서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개인 및 단체
 - ※ 신기술 신청자격 입증을 위한 근거자료제출(특허, 공동연구개발협약서 등)

4.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제도의 종류

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

-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의 효율성, 우수성(기술의 성능, 현장 적용성) 등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종합평가를 통해 신기술을 지정



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

- 자연재해저감기술의 효율성, 우수성(기술의 성능, 현장 적용성) 등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서류 심사·현장검증·종합평가를 거쳐 신기술을 검증

※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 검증서 발급

5. 평가의 절차

신기술 지정	접수 → 공고 → 현장조사(현장 적용성 등 평가신청서 내용과 일치여부) → 서류심사(전문기관) → 지정 → 우선활용권고(지자체 등)
---------------	---

기술검증	접수 → 공고 → 현장조사 → 서류심사(전문기관) → 현장평가(현장시설 시험·분석 등 성능 평가) → 종합평가 → 검증 → 우선활용권고(지자체 등)
-------------	--

6. 평가기준

구분	지정(검증)	보호기간 연장
신규성	신규성, 시장성, 후속연구의 필요성	-
우수성	기술의 성능, 현장적용성	기술수준(성능), 중요도, 안정성, 경제성
활용실적여부	-	활용건수, 활용공사비, 활용범위
가점	-	해외활용실적, 기술보급 노력
현장평가여부	(검증 시)	-

7. 지원제도

보호기간

- 신기술지정 및 검증의 보호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년(영 제52조 제1항)
- 신기술의 지정 및 검증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4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(영 제52조 제2항)

신기술 표시(마크)사용

-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·용기 및 홍보물 등에 신기술표시 사용 가능

우선활용 권고

-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저감기술로 지정고시 된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우선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권고(영 제51조)

기술사용료 청구

- 기술개발자 에게 자연재해저감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 자연재해저감분야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(법 제60조)

8. 평가비용

구분	금액(1건당)	현장평가
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	2백만원	-
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	2백만원	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신청자와 평가전문기관의 협약체결
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	2백만원	-

9.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신청 및 문의

• 접수 및 문의처

- 접수처 :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기후변화대응과 TEL) 02-2100-5496
- 평가관련문의처 : 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TEL) 02-3472-8072

•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자료는 홈페이지참조

-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제도 홈페이지 : www.dtnet.or.kr